

가. 세금의 종류와 내용

인도 정부는 조세 제도의 투명화, 단순화, 효율화를 위해 종래 각 주에서 다양한 세율로 적용하여 운용하던 판매세를 부가가치세(VAT)로 대체하는 제도를 2005.4.1일부터 시행중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물품세, 서비스세와 지방정부의 VAT, CST 등 모든 주요 간접세를 2010년까지 GST(Goods and Services Tax)로 통일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심각한 재정 적자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1994년 서비스세를 도입하는 등 조세 기반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나, 각종 조세 관련 예외 규정을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있어, 조세기반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및 영업 활동 시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조세 권한을 공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농업소득세를 제외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세, 부유세 등 대부분의 직접세와 관세, 물품세(Excise Taxes), 서비스세 등의 간접세를 부과한다.

주정부가 과세하는 가장 중요한 조세에는 간접세인 VAT(VAT로 대체되지 않은 주는 판매세(Sales tax)), 인지세(Stamp Duty), 주 물품세(State Excise) 토지 수입세, 직업세(Profession Tax) 등이 있다. 이와 별개로 하위 지자체(Local Bodies)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입시세(Octroi), 수도세, 정화세 등이 있다.

중앙정부는 주간(Inter-state) 상품 교역에 대해 주간 판매세(CST : Central Sales Tax)를 부과하나 실제 징수는 주정부에서 실시하며, 세수도 주정부에 귀속된다.

□ 직접세

1) 법인세

법인소득에서 원자재매입, 임금, 합리적인 수준의 상여금, 임대료, 보험금, 로열티지급액, 이자, 배당금, 리스대금, 세금(판매세, 시영(市營)세, 재산세, 도로세, 관세 등), 감가상각, R&D 관련비용 등을 제한 금액이 법인세의 과표가 된다.

인도 기업과 외국기업간에 법인세율에 차이가 있다. 인도에 설립한 현지법인은 인도 법인으로 간주되나, 지사 프로젝트 오피스의 경우는 외국법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인도정부의 2008-09년도 법인세율은 구체적으로 인도기업의 경우 실질법인세율은 33.99%이며, 지사 형태의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실질 법인세율이 42.23%로서 전년회계년도와 변동 없다.

2007년 회계연도부터 교육세가 기존 2%에서 3%로 인상되었고, 과세 소득 천만 루피 이하에 대해서는 surcharge가 면제되고 있다. 한편, R&D 활동을 위해 차입한 자본에 대한 이자지급의 경우 125 ~15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기술료를 지불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연간 25%의 감가상각을 인정한다.

인도와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조세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에게는 주식배당, 이자, 로열티, 기술서비스료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한-인도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한국기업의 경우 주식배당에 대해 15% 또는 20%, 이자에 대해 10% 또는 15% 로열티에 대해 15%, 기술서비스료에 대해 15%를 과세한다.

수출위주의 기업이나 특별경제구역(SEZ)에 입주해 있는 기업, IT 파크 등 특정 지역 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약 10년간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이들 지역 또는 기업으로는 개별 공고된 특정주(notified States) 및 낙후지역(backward Districts) 입주기업, 전자 하드웨어 테크놀로지파크(Electronic Hardware Technology Parks, EHTPs) 및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파크(STPs) 입주기업, 100% 수출기업(Export Oriented Units, EOU) 및 수출가공구 (EPZ) 입주기업,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 입주업체 등이다.

또한 인프라스트럭처 시설(도로, 고속도로, 공항, 항만, 철도, 상수, 관개, 위생 및 하수설비 프로젝트 등)의 개발, 보수, 운영관련 기업, 과학 및 산업관련 연구 및 개발활동(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 Development Activities) 관련기업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과표(연간소득)	천만 루피 이상 소득세율	천만 루피 이하 소득세율
국내기업 (Domestic Companies)	33.99% (30%+10%surcharge+3% 교육세)	30.9% (30%+3%교육세)
외국기업 (Foreign Companies) *지점, 프로젝트 오피스 포함	42.23% (40%+2.5%surcharge+3% 교육세)	41.2% (40%+3%교육세)

2) 개인 소득세

소득세는 소득 정도에 따라 세율이 누진 과세된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10%, 20%, 30%의 3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과세를 위한 거주자의 범위는 당해 회계연도 중 인도 내에 182 일 이상 머무는 경우, 또는 지난 4 년간 합쳐서 365 일 이상을 인도 내 체재한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인도에 60 일 이상 머문 경우는 거주자로 간주되어 개인 소득세가 과세된다.

2008-09 년 개정된 소득세안에 따르면, 과세가 인정되는 소득범위는 작년의 11 만 루피에서 올해 15 만 루피로 상향 조정 되었으며, 여성과 노약자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과세 기준을 각각 18 만, 22 만 5 천 루피로 상향 조정하였다.

소득 수준이 최대 기준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된 세금에 대해서 10%의 추가 세금(3%의 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또한 2%였던 교육세가 3%로 증가하여 이 경우 연간 소득이 1 백만 루피가 넘는 사람의 경우 33.99%로 세금 부담이 복리 계산된다.

2008-09년 개정된 소득세 기준안

연간 소득수준	소득세율		
	남자	여자	노인
Upto Rs, 150,000	0%	0%	0%
Rs, 150,000-180,000	10%	0%	0%
Rs, 180,000-225,000	10%	10%	0%
Rs, 225,000-300,000	10%	10%	10%
Rs, 300,000-500,000	20%	20%	20%
Rs, 500,000-1,000,000	30%	30%	30%
Rs.1,000,000 이상	33.99%	33.99%	33.99%

3) 배당 분배세

배당금 수령 주체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배당분배세(Dividend Distribution Tax)는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총 16.995%의 과세 부담을 진다.(15% + 10% 과징금 + 3% 교육세) SEZ 개발자의 이익의 경우에는 배당분배세 과세 면제 대상이나, 대신 배당금 수취자로부터 배당세를 원천징수한다. 즉 인도에서 과실송금을 위해 한국의 주주에게 배당을하기로 결정한 경우, 배당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차액만을 한국으로 송금하게 된다. 배당분배세율은 2007년 회계 연도에 기존 12.5%에서 15%로 인상된 바 있다. 2008-09년 예산 발표에서 모회사에 의해서 분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지사로부터 받은 배당을 모회사가 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4) 최저한세(MAT: Minium Alternative Tax)

최저한세란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비용 공제와 손금 산입 등으로 인해 법인세가 장부상 이익의 10%이하로 산출된 경우에도 납부해야 하는 10%의 법인세이다. 즉 사업소득이 있는 기업이 아무리 많은 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으로, 기업들의 세테크를 통해 법인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부과하는 세금이다.

인도정부는 2006-07 회계연도부터 최저한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하였으며, 2007-08 회계 연도부터는 그 동안 STPI(Software Technology Park of India) 등 일부 규정에 따라 적용의 면제를 받던 업체들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다.

실질 최저한세율(%)

회사형태	과세소득 > 1천만 루피	과세소득 ≤ 1천만 루피
국내회사	11.33	10.3
외국회사	10.557	10.3

본 세율은 교육세와 과징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2007-08 회계연도부터 법인세 면제 대상 기업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납부도록 함으로서 특별경제구역(SEZ) 입주기업, 소프트웨어 단지(STP) 입주기업, 수출특화기업(EOU)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

5)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모든 인도 기업은 특정 지불 요건 발생시점이나, 피지불인의 계좌에 지급하는 시점에 지정된 비율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제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공제 월 말로부터 7일 이내에 인도 중앙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주요 원천징수 대상에는 급여, 전문·기술 서비스료, 이자, 용역료, 임차료, 커미션 또는 중개료 등이 있다.

또한 기업은 매분기 말부터 15일 이내 조세 당국에 일정 신고서 양식을 기재하여 전산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누락시에는 매월 누락분의 1%에 해당하는 이자가 징수되고, 세금과 동일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인도 기업은 매해 10월 말까지 직전 회계연도 소득을 전산 신고하여야만 한다.

비거주 인도인과 외국기업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재정법(Finance Act)에 의해 정해진다.

과세대상별 원천징수세율(%)

과세 대상	인도 소득세율	한국(주2)
이 자(Interest)	21.115	15
배당금(Dividends)	0 (주1)	20
로열티 (Royalties) 기술서비스(Technical Services)	10.5575	15

주1 :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나 배당기업에 배당분배세를 과세

주2 : 이중과세방지협약세율

소득세법 90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인도소득세율과 이중과세방지협정세율 중 이득이 되는 세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 Tax)

부가급부세(FBT)는 2005-06 회계연도에 도입된 세금으로 회계 기간에 고용인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혜택의 가치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로 외국회사의 주재원이 인도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숙소, 차량 등의 편의제공 부분에 대하여 33.99%의 비율에 의한 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거주용 시설, 설비, 서비스 또는 특전
- 직원 또는 직원 가족의 사적인 여행에 대해 지출한 비용
- 각 고용인에 대해서 10만 루피를 초과하는 국민연금 기업부담금

위에 사항에 더하여, 사업 추진 시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비용 중 일부가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기타소득세는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며, 연체 시 월 1%의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항목별 기타소득세율(%)

번호	비용 항목	기타소득으로 간주 가능한 비용 범위	실제 세율
1	유흥비	20	6.798
2	사무실 또는 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지출한 식음료비	20	6.798
3	컨퍼런스 참가비	20	6.798
4	판촉비	20	6.798
5	법정 복리비 이외의 직원 복리비	20	6.798
6	운송비	20	6.798
7	숙박비	20	6.798
8	자동차 수리, 유지, 운영비(감가상각 포함)	20	6.798
9	비행기 수리, 유지, 운영(감가상각 포함)	20	6.798
10	임차 전화 이외의 전화비용	20	6.798
11	직원 숙소 유지비	20	6.798
12	연회비	50	16.995
13	운동 시설 이용비	50	16.995
14	운동 시설 이외 클럽 이용비	50	16.995
15	선물비용	50	16.995
16	학자금	50	16.995
17	직원의 해외여행 비용	5	1.70

2008-09년 정부예산안 발표에서 법인과 회사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가급부세(유급휴가, 건강보험, 연금등)법을 개정하고, 탁아소, 고용스폰서십, 게스트하우스 제공, 고용인을 위한 스포츠이벤트 조직 등은 부가급부세의 조항에서 배제하기로 하였다.

7) 부유세(Wealth Tax)

인도 정부는 1957년 부유세법(Wealth Tax Act)에 따라 개인과 회사에 대해 150만 루피를 초과하는 비생산요소자산(non-productive assets)에 매년 3월 31일 1%의 부유세를 부과한다. 토지, 비공장건물, 영업이나 생산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상업용 재산, 종업원을 위한 사무실이나 기숙사시설, 귀금속 또는 장식품, 자동차, 비행기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 간접세

1) 관세

인도의 관세 구조는 기본관세와 상계관세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기본관세는 순수한 관세를 의미하며, 상계관세는 내국세인 소비세(Excise duty)를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합산하게 하는 CVD(CounterVailing Tax)가 있다. 또한 인도는 교육 특별세 3%를 상계

관세와 총 관세에 각각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총 관세율은 기본관세와 상계관세의 단순 합보다 약간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 2006-07년부터 새로이 기본관세 인하에 따른 내국 산업보호 목적의 추가적인 특별관세로서 ACD(Additional Customs Duty)를 최종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기본 관세가 내려갔음에도 변경 전보다 오히려 최종 관세 합이 더 높아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2008-09 년도 관세 산정방식

관세	%	산출식
기본관세(Basic duty)	10	가. 기준 가격 : 100으로 가정 A. Basic duty : 10% = 10 나. 기본관세 후 가격 : (가)+A = 110
상계관세(CVD)	14	B. Countervailing Duty (CVD) : (나) * 14% = 15.4
교육특별세(Cess)	3	C. CVD Education Cess: (B) * 3% = 0.462 D. Total Education Cess: (A+B+C)*3% = 0.7758
특별관세(ACD)	4	E. (가+A+B+C+D) * 4% = 5.06512
Total:	31.7033%	다. 총관세 : A+B+C+D+E = 31.7033%

인도는 품목에 따라 물론 관세가 다르지만 전체 품목의 70% 정도가 기본 최고관세가 적용되며, 인도의 기본최고관세는 지난 수년간 매년 최고 5%씩 인하되었으며, 2007-08 년도에 대부분의 제품의 기본관세는 10%로 인하되었다.

또한 기계류 등 자본재와 특정 원자재에 대해서는 5% 또는 10%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많고, 수출구역에서 제작한 물품을 내수시장에 판매할 경우의 관세는 품목별 기본 관세율의 100%에서 50%로 조정되었다.

○ 2008~09 년도 수입관세율 변동 품목

- 원자재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Steel melting Scrap 와 알루미늄 스크랩에 대한 기본관세를 5%에서 0% 인하
- 생명과 관련된 제약, 그러한 제약들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대량의 약에 대해서 현재 소비세 또는 상계 관세 등의 완전 면세뿐만 아니라 기본관세를 10%에서 5%로 인하
- 소와 닭의 사료의 제조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타민 혼합, 미네랄 혼합에 대해서 기존 30%에서 20%로 기본관세 인하, 인산에 대한 기본관세는 7.5%에서 5%로 인하
- IT/전자 하드웨어산업에서 사용되는 특정 원자재와 일부 셋톱박스 부품에 대한 완전 면세
-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사용되는 장치에 대해서 컨버전스 제품에 대한 기본관세를 10%에서 5%로 인하
- 스포츠 제품의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계류에 대한 기본관세를 7.5%에서 5%로 인하 또한 스포츠 제품의 특정 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를 면제함.
- 보석과 귀금속 산업의 가치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미가공 큐빅 지르코니아에 대한 관세를 면제, 가공된 큐빅 지르코니아 제품에 대한 기본관세는 현행 10%에서 5%로 인하 또한 미가공 산호에 대한 기본관세는 10%에서 5%로 인하
- 헬기 조종사의 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 헬기 시뮬레이터에 대한 기본관세를 폐지

- 국내 비료생산의 원조를 위해 원유와 정제되지 않은 황에 대한 기본관세를 5%에서 2%로 인하
- 폴리머에 제조에 사용되는 나프타에 대한 관세면제를 철회하고 5%의 관세를 부과함. 반면에 비료 생산을 위해 수입된 나프타에 대해서는 관세의 면제가 지속됨.

2) 소비세(물품세)(Excise Duty: CENVAT)

2008-09년 인도 정부는 제조업 분야의 촉진을 위해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소비세율을 16%에서 14%로 인하 발표하였다.

일부 품목에 따라 8%, 12%, 24%의 세율이 부과되기도 하며, 매년 정부 예산안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조정이 이루어진다.

○ 2008-09년 소비세 인하 품목

- 제약분야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현행 16%에서 8%로 인하
- 버스와 버스의 차대(chassis)에 대한 소비세를 현행 16%에서 12%로 인하
- 소형차에 대한 소비세를 현행 16%에서 12%로 인하
- 이륜차와 3륜차에 대한 소비세를 현행 16%에서 12%로 인하
- 종이와 판지에 대한 소비세를 현행 16%에서 12%로 인하
- 쓰기와 프린팅, 포장지 등의 다양한 목적의 종이에 대한 12%에서 8%로 인하
- 퇴비관련 기계류, 무선 데이터 카드, 포장된 코코넛 워터, 차, 커피믹스, puffed 쌀을 포함 몇몇 품목에 대한 소비세를 16%에서 0% 변경
- 정수기, 베니어합판(Veneers), 살균한 붕대(sterile dressing pads) 특정포장 원료와 아침용 시리얼 등을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한 소비세를 16%에서 12%로 인하
- 항 AIDS 약품, 이 약품의 제조에 쓰이는 대량의 의약품에 대한 소비세를 완전면세
- 냉동 체인 설비를 촉진하기 위해 50KW 와 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2 톤 이상의 냉동장비(컴프레서, 콘덴서 장비, 증발기, 기타 등으로 구성됨)에 대한 소비세를 면제

○ 2008-09년 소비세 인상품목

- 벌크의 시멘트와 포장된 시멘트에 대한 소비세율에 대한 동등을 위해 벌크 시멘트는 1MT(metric Tonne) 당 400 루피 또는 증가세(ad Valorem) 14%를 부과, 시멘트 벽돌은 1 MT 당 450 루피의 소비세 부과
- 포장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2%로 인상
- 필터-비필터 담배들에 대한 세금 부과 전망
- 브랜드가 없는 경유는 리터당 14.35 루피, 디젤의 경우는 리터당 4.60 루피의 특소세가 부과
-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양(yarn)에 대해 'NCCD'라고 불리우는 1%의 소비세 부과

3) 서비스세 (Service Tax)

서비스세는 컨설팅, 부동산, 조사회사, 공인 회계사 등 특정 서비스 활동에 대해서는 12%의 서비스세와 Finance Act 2004에 만들어진 수정안에 따라 총 서비스세에 대한 3%의 추가세가 부과되어 합계 12.36%가 부과된다. 또한 인도 정부는 재원확보 수단으로 시간이 갈수록 서비스세의 부과 대상 및 세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현재 대략 98개 서비스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06년부터 서비스세(Service Tax(Determination of Value) Rules, 2006)를 도입했다.

4) 판매세(Sales Tax)

판매세는 주정부의 판매세(State Sales Tax)와 중앙정부 판매세(Central Sales Tax)의 두 종류가 있다. 주를 넘는 거래일 경우에는 주정부 판매세와 중앙정부 판매세 모두 부과되나, 주 내부의 거래일 경우에는 주정부의 판매세만이 부과된다. 중앙정부 판매세는 품목에 따라 4% 또는 10%가 부과된다.

주 정부간의 거래일 경우에 판매된 모든 제품에 대해서 중앙정부 판매세와 3%-10%의 세율 또는 주정부 판매세율이 과세된다.

5) 부가가치세(VAT)

주정부의 판매세는 28개 주별로 다르고, 또한 제품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2005년 4월 1일부터 인도정부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주정부의 판매세는 부가가치세로 대체되었다. 타밀나두 주 정부는 2007년 1월부터 VAT 시행했다. VAT의 도입과 함께 타밀나두의 General Sales Tax Act, 1959 법안은 폐지되었다. 판매세 형태는 현재 폰디체리 연합주와 우따르 프라데쉬 주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부가가치 세율은 일반적인 제품에 대해 대부분 12.5%가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산업용 원자재나 자본재, 농산물, 의약품 등 270개 품목에 대해서는 4%가 적용되고, 금, 은, 등 귀금속에 대해서는 1%가 적용되고 있다.

6) 물품입시세 / 진입세(Octroi Duty/Entry Tax)

도시(municipal) 당국에서 과세하는 물품입시세는 도시안에서 판매 또는 사용, 소비를 위해 그 도시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진입세는 주(state)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주정부가 과세한다.

현재 물품입시세는 마하라슈트라 주 안에서만 징수되고 있으며, 물품입시세율은 도시에서 도시간 다양하다. 진입세 또한 주간 세율이 다양하다.

7) 인지세(Stamp Duty)

교환, 약속어음, 보험증권, 주식의 양도계약, 사채 그리고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등과 같은 서류에 대해서 다양한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인도에서 주식의 양도에 관한 인지세는 시장가에 대해서 0.25%를 과세한다.

9) 연구개발세(R&D Cess)

기술 수입에 대해서는 5%의 R&D세를 과세한다. 기술의 의미는 디자인, 설계, 출판물 그리고 기술직원의 서비스(기술직원의 인도에서의 생활비용도 과세될 수 있음.)등을 포함한다.

10) 재산세 (Real estate Property Tax)

시정부는 부동산(Real Estate Property Tax)에 대해, 주정부는 토지로부터의 수익에 대해 과세한다. 한편 한 회계연도에 12만루피를 초과하는 각종 임대료(Rental Payment) 수익도 원천과세 대상이 된다(개인 15%, 그 외 20%).

나. 이중과세방지협정과 국별 협정 세율

인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70 개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각 국별 적용세율은 아래와 같다.

인도의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국 및 국별 적용세율

대상국	이자소득세(%)	배당세(%)	로열티(%)
호주	15	15	15
오스트리아	10	10	10
아르메니아	10	10	10
방글라데시	10	15	10
벨라루스	10	15	15
벨기에	15	15	10
브라질	15	15	15
불가리아	15	15	20
캐나다	15	25	15
중국	10	10	10
사이프러스	10	15	15
체코공화국	10	10	10
덴마크	15	25	20
이집트	20	20	30
핀란드	10	15	15
프랑스	15	10	10
독일	10	10	10
그리스	20	0	10
헝가리	10	10	10
인도네시아	10	15	15
아일랜드	10	10	10
이스라엘	10	10	10
이태리	15	25	20
일본	10	10	10
요르단	10	10	10
카자흐스탄	10	10	10
케냐	15	15	20
한국	15	20	15
키르기즈스탄	10	10	15
리비아	20	0	10

말레이시아	10	10	10
말타	10	15	15
모리셔스	20	15	15
몽고	15	15	15
모르코	10	10	10
나미비아	10	10	10
네팔	15	15	15
네덜란드	10	10	10
뉴질랜드	10	15	10
노르웨이	15	15	10
오만	10	12.5	15
필리핀	15	20	15
폴란드	15	15	22.5
포르투갈	10	15	10
카타르	10	10	10
루마니아	15	20	22.5
러시아연방	10	10	10
사우디아라비아	10	5	10
싱가폴	15	15	10
남아공	10	10	10
스페인	15	15	20
스리랑카	10	15	10
스웨덴	10	10	10
수단	10	10	10
스위스	10	10	10
시리아	7.5	0	10
슬로베니아	10	15	10
탄자니아	12.5	15	20
태국	25	20	15
트리니다드코바고	10	10	10
터키	15	15	15
투르그메니스탄	10	10	10
우간다	10	10	10
우크라이나	10	15	10
UAE	12.5	15	10
아랍연방공화국	21	0	10
영국	15	15	15
미국	15	20	15
우즈베키스탄	15	15	15
베트남	10	10	10
잠비아	10	15	10

자료원: Foreign Direct Investment-Policy & Procedures(www.dipp.nic.in)

다. 조세 관련 유의사항

인도의 관세 체계는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인도의 총관세는 기본관세(Basic Duty)와 부가 관세(Additional Duty), 그리고 특별부가관세(Special Additional Duty)를 합산하여 산정되며, 이 또한 단순합산이 아니라 복리 계산하는 방식처럼 복잡한 산식에 의해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인도는 조세제도가 복잡하고 세무 공무원들의 재량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으며, 법인 및 개인소득세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 주재원들은 개인소득세를 낮추어 신고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인도 세무당국은 빈번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근무 중인 주재원은 물론, 10년 전 근무한 바 있는 과거 주재원들의 개인소득세 축소 신고액을 찾아내 추징한 사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추징금 납부로 사안이 종결된 이후에도 세무당국 책임자가 교체되면 종전의 추징금 계산에 하자가 있었던 부분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제2차, 제3차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추징금을 부과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투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잦다.